

—구미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0년 12월 5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0년 12월 5일

라. 상정일자 : 2000년 12월 9일

제57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사회복지과장 이 신 자

나. 제안이유

-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일부 조항을 삭제하되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

다. 주요내용

- (제 5조) 1항중 생활보호대상자 →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(법개정)
- (제 8조) 3항중 시의회 총무위원장 → 기획행정위원장(조례개정)
- (제13조) 제1항 제1호 “학업성적이 불량할 때” (삭제)

라. 참고사항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
- 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경 도

-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, 구미시위원회조례 개정으로 현행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고 규제 완화 차원에서 조례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타 조례와 저촉사항은 없으나
- 본 조례 제14조(기금운용계획및결산보고)①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내용중 운영은 운용으로, 동조②항 시장은 출납 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내용중 3월 이내를 80일 이내로

동조 ③항제2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중 120일 전까지를 6월말로 수정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이며 기타 타법이나 조례에 저촉 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 가결